

[해설]

海外漁場의 開發과 合作漁業의 推進方向

沈 相 萬

韓國遠洋漁業協會 漁業協力擔當 常務理事
(1993년 1월 18일 접수)

I.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概況

우리나라의 遠洋漁業은 1957年 濟東產業(株) 所屬 指南號가 印度洋에서 참치延繩試驗操業을 成功的으로 實施함으로서 本格化되었으며, 30餘年이라는 短은 歷史 속에서도 政府의 積極的이고 效果的인 投資 支援과 遠洋漁業 從事者の 不屈의 闘志와 意慾으로 世界 5大洋을 開拓하면서 刮目할 만한 成長을 이룩하였다.

1960年代 初盤 100余隻 未滿이던 遠洋漁船勢力이 70年代 後半에는 史上最高인 850隻으로 크게 增加하게 되었고, 生產面에서도 60年代에는 10萬 M/T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던 것이 79年 後半에는 50萬 M/T를 上廻하였고, 輸出은 60年代 2,000萬 \$ 内外 이던것이 3億 5千萬 \$ 水準으로 伸張하게 되었다.

그러나 70年代 後半부터 美國을 為始하여 각 沿岸國의 200海里 經濟水域宣布와 油價波動, 魚價下落, 各種 操業規制措置 等으로 遠洋漁業은 類例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우리遠洋業界는 이를 克服하고 活潑한 操業活動으로 91年 한해동안 800余隻의 漁船이 海外漁場에서 873,000M/T을 生產하였고, 輸出은 5億 3,400萬 \$의 成果를 舉揚하였다.

沿岸國들은 資源自國化政策을 強化하고 各種 規制措置는 물론 入漁料 支拂方式에서 共同漁業내지 合作事業形態로 轉換함에 따라

漁場이 없는 우리 業界는 漁場確保次元에서 不利한 條件을甘受하면서도 1970年 後半부터 一部 業體에서 合作事業을 推進하기始作한 後 1991年 現在 11個國에서 45個社 62隻의 船舶을 投入 運營하고 있다.

우리遠洋漁船의 海外基地는 太平洋 10個所, 大西洋 9個所, 印度洋 6個所 등 總 20余个國에 總 25個所를 두고 있으며, 1萬6千余漁船員이 從事하면서 國威宣揚과 國民食糧供給 開發에 力하고 있다.

2. 海外漁場의 開發現況

1957年 印度洋에서 참치延繩漁業을始作한 후 商業目的으로는 1958年에 太平洋 사모아를 基地로하여 美國의 VAN CAMP 水產食品會社에 漁獲物을 輸出하여 最初로 外貨를 獲得하였으며 1964年에는 大西洋의 西部아프리카漁場을 開發하였고 1966年에는 印度洋漁場에도 本格的으로 出漁했다.

트롤漁業은 1966年 韓國水產開發公社가 라스팔마스를 基地로하여 601 江華號를 試驗操業次 西部 아프리카의 사하라漁場에 出漁시켜 漁場性을 確認하고 이어 15隻의 漁船을 年次의으로 投入 操業하게 된 것이 트롤漁業의 始作이었으며 한편 1966年 7月에는 釜山水產大學校 實習船 白鯨號와 三洋水產所屬底引網漁船 10隻이 北太平洋漁場에서 試驗操

業을 實施하여 트롤漁業의 可能性을 確認하였고, 1967年에는 新興水產(株)이 인도네시아 近海에 트롤漁船을 投入하여 本格的으로 참치延繩漁業과 트롤漁業이 遠洋漁業의 主業種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1968年부터는 北太平洋트롤漁船이 商業的으로 出漁하였고 1970年에는 南美 수리남 새우 트롤漁船이 本格的으로 操業하기 始作하였으며 當時 트롤漁船 出漁隻數는 總 278隻에 이르게 되었다.

1971年에는 가다랭이 채낚기漁業이 開發되었으며, 1975年에는 이란海域에도 트롤漁船이 進出하였고, 1977年에는 뉴질랜드 水域에서 오징어 채낚기船, 1979年에는 北太平洋公海上에 오징어 流刺網漁船이 出漁하게 되었다.

1985년에는 南西大西洋의 포클랜드 水域에
오징어채낚기 漁業과 北太平洋 봉치봉수망漁
業이 開發되었으며 1990年度에는 페루및 에
콰돌水域에 오징어채낚기 漁場이 開發되어
現在 操業中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沿岸國과의 合作事業은

表 1. 國別・業種別 合作事業 現況

國名	業種	投入隻數	備考
中國	트롤	4	
	기선저인망	5	
인도네시아	트롤	4	
칠레	트롤	2	
멕시코	트롤	1	
뉴질랜드	트롤	2	
美國	트롤	7	
아르헨티나	트롤	1	
	채낚기	7	
	“및 저연승”	9	
소련	저연승	2	
	트롤	1	
필리핀	새우양식		
노르웨이	트롤및 건착	1	
우르과이	생끌이	2	
總 11 個 國		62隻	

1970年에 濟東產業이 파나마와 참치漁業을目的으로 5,000\$를 投資하여 SHIM MASON CO.란 現地法人을 設立한 것이 처음이고 그以後 1976年 美國 알라스카의 데비니社와 명태收買 合作이 있었으나, 對方社의 條件 不備 等으로 크게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中 1970年 後半부터 各國의 漁業規制措置가 더욱 強化됨에 따라 漁場確保次元에서 北南美및 大洋洲 國家들과 漁業合作事業을 推進하였고, 그 以後 繼續 增加하여 1991年 未現在는 11個國에 45個社 62隻이 合作事業에 參與하고 있다.

3. 200海里 經濟水域宣布가 遠洋漁業의 海外漁場 開發에 미친影響

1977年 美國 및 소련이 200海里 經濟水域을
設定하기 前까지 北洋漁場을 비롯하여 大西洋
에서 많은 漁獲高를 올렸으나 뒤따라 大部
분의 沿岸國의 漁族資源의 保存管理를 위하여
200海里를 宣布함에 따라 高額의 入漁料
를 支拂하고 키타操業을 하게됨에 따라 漁業
의 採算性은 弱化될 수 밖에 없었으며, 規制
措置의 強化로 우리의 遠洋漁業을 크게 萎縮
되기 始作하였다.

○ 200海里 經濟水域 宣布

이와같이 世界沿岸國들의 200海里 經濟水域宣布는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生產, 出漁集

表 2. 200海里 經濟水域 宣布

地域別	沿岸 國數	宣 布 國 數				未宣佈 國數
		計	領海	漁業專 管水域	經濟	
		水域				
計	144	113	13	20	80	31
아프리카洲	37	29	5	3	21	8
아세아洲	20	15	—	3	21	8
北 南 美 洲	33	31	8	3	20	2
유 럽 洲	24	18	—	9	9	6
中 東 地 域	15	5	—	—	5	10
大 洋 洲	15	15	—	2	13	—

數, 그리고 輸出에 큰 影響을 끼쳤는데 生產과 出漁隻數面을 보면 1977年을 고비로 하여 크게 減少하게 되었음을 알수 있다.

200海里 經濟水域의 宣布는 自國의 漁族資源을 合理的으로 保存管理하여 다른 나라와의 入漁는 兩國間 또는 多國間의 漁業協定締結을 비롯하여 資源의 共同開發 및 利用도록 함께 따라 漁場을 利用하는 操業國은 業種別로 漁業協定을 締結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面直하게 되었다. 이에 政府로서는 安定的인 操業을 위해선 漁業協定 締結이 不可避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美國, 뉴질랜드, 濟州, 불란서, 투발루 및 쿠아일랜드, 솔로몬, 모리타니아, 最近에 와서는 PNG 및 러시아와도 漁業協定을 締結하게 되었는데, 同漁業協定을 通하여 自國漁業의 基盤을 造成하고 國內沿岸業者의 發展을 圖謀하고자 締結한 漁業協定의 內容에는 入漁隻數, 操業海域의 指定, 總漁獲許容量, 入漁料의 決定, 漁獲物의 轉載港口指定, 옵서버乘船, 沿岸漁民의 漁業技術訓練 等의 條件을 附與하여 入漁條件를 더욱 惡化시키고 있으며 最近에 와서는 公海上의 操業報告를 비롯하여 隣近漁場關聯國이 團合하여 入漁에 많은 問題點을 提起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 入漁料技術現況

우리漁船이 支拂한 入漁料는 1977年 3,959千\$이던 것이 1984年 28,900千\$로 增加하였으며, 1990年 32,200千\$, 1991年에는 무려 42,660千\$로 增加하였고 兩國協力操業形態 入漁料를 包含할 때 무려 93,950千\$에 이르고 있다. 國別로는 南太平洋 島嶼國을 비롯하여 포클랜드, PNG, 페루 等 國家의 入漁料가 每年 增加趨勢에 있어 漁業採算性을 惡化시키고 있다.

表 3. 入漁料 支拂現況

年 度	1977	1980	1984	1990	1991	備 考
入漁料 (千\$)	3,959 (100%)	11,546 (292%)	28,942 (731%)	32,243 (814%)	42,660 (1,077%)	

4. 合作漁業 推進現況

合作漁業投資는 海外漁場確保와 安定的 操業을 위하여 不可避한 對應策의 一環으로써 入漁國의 漁場을 共同으로 利用하여 企業運營의 合理化를 圖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海外合作投資는 1970年에 처음으로 始作되어 그후 每年 外國과의 合作漁業은 推進되어 왔으나 크게 活潑하지 못하였으며 1980年後半부터 急激히 增加하여 海外合作投資를 業種別로 보면 오징어채낚기, 트롤, 참치延繩이 주류를 이루며 國家別로는 中國, 美國, 칠레,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멕시코, 필리핀, 노르웨이, 우루과이, 러시아, 알제리等 11個 國家에 45個社가 62隻이 韓國銀行의 許可를 得하고 있으며 實地로 外國現地法人을 설립하여 入漁하고 있는 것은 26個社 42隻이 操業中에 있으며 海外合作投資가 가장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는 國家는 알제리이며 同水域의 漁場을 利用하여 오징어漁業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 業體가 가장 많다.

5. 當面 遠洋漁業의 問題點

우리나라 遠洋漁業은 生產面에서 世界 7位로서 上位圈에 있으나 200海里 時代의 現 國際環境狀況下에서 繼續 發展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많다.

○ 첫째, 新海洋法 時代를 맞이한 우리들은 漁場을 保有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서 漁場保有國들의 自國化 政策의 強化로 인하여 入漁條件가 크게 惡化되고 있고

○ 둘째, 美國, 러시아, 加拿다, 英國, 뉴질랜드, 濟州등 強大國들이 漁族資源 保存管

리를 위하여 公海上의 操業까지 規制하고 있으며

○ 셋째, 世界環境保護主義者 團體가 海洋生物資源의 保護運動를 國際社會에 興論化시켜 우리들이 操業하고 있는 모든 漁業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狀況이다.

○ 넷째, 우리의 遠洋漁業은 그동안 政府의 많은 支援下에 成長하여 왔으나 日本과 같이 海外漁場 開發을 위한 專擔機能을 가진 機關이 없어 民間業體에서 스스로가 沿岸國과 交涉하여 入漁를 推進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業界의 負擔이 過多 發生되어 왔다.

○ 다섯째, 우리나라 3面이 바다이나 다른 나라와 같이 漁族資源을 크게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狀態이므로 沿近海漁場은 물론 海外漁場 開發을 위하여는 政府次元의 과감한 施策轉換이 있어야 하겠다.

이미 北太平洋의 오징어流刺網漁業은 1991年 12月 第46次 UN決議에 依據 操業禁止 決議가 되어 150隻의 오징어流刺網漁船은 今年 11月 以後부터는 操業을 中止하여야 할 運命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代表的業種인 北洋트롤漁船의 베링公海漁場의 入漁는 禁止토록 關係國間に 協約이 進行中에 있으며, 낚시로 잡는 참치延繩漁業도 많은 制約를 받고 있다.

國內自體의 問題點으로는 漁船의 老朽화, 經營體의 運營資金의 劣弱, 船員確保을 비롯한 勞使間의 問題點, 魚價의 適正維持不可, 流通體系 未治 等이 있으며 그리고 漁業經營의 3大要素의 하나인 出漁資金의 過期調達은 가장 重要한 것이나 政府에서는 遠洋出漁資金 總所要額 4,000億원 中에서 20%에 不過한 810億원 限度에서 支援되고 있는 實情이므로 漁業經營에 支障이 크며 貸出金의 金利마저도 外國에 比해(日本4%) 不利한 立場(8%)에 있어 國際競爭力 弱化에 큰 要因이 되고 있다.

또한 1987年 6.29 民主化措置에 따라 遠洋

漁業界도例外일수는 없어 그간 抑制되어 온 船員賃金의 一時的인 改善要求와 이로 인한 勞使紛糾의 過熱化로 年平均 40%가 넘는 賃金上昇을 가져왔으며 또한 遠洋漁船에의 乘船을 忌避하여 優秀船員 確保難은 물론 未經驗船員의 雇傭으로 漁船員事故發生이 頻發하고 中途下船에 의한 操業損失을 加重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6. 海外漁場開發 및 合作漁業의 推進方向

이러한 狀況下에서 海外資源을 開發하고 安定的으로 遠洋漁業을 發展시키자면 지금부터라도 漁業構造의 再整備가 과감히 實施되어야 하겠으며 現在와 같이 어려운 國際漁業環境 狀況下에서는 漁業競爭力を 強化하여야 하므로 老朽船의 代替와 海外漁場에 適正隻數를 入漁시켜야 하며 漁業採算性을 높이기 위하여는 減船措置가 必要하므로 政府의 일관성있는 施策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船齡이나 漁船의 安全性 그리고 經營實態와 企業採算性을 慎重히 考慮하지 않고 中古船의 導入許容과 漁業許可만을 得하게 하여同一漁場에 多은 隻數를 出漁하게 한다는 것은 業界相互間의 漁業採算性을 弱化시키는 等의 問題點을 야기시킬 憂慮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遠洋漁業을 持續的으로 發展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遠洋漁業에 對한 政府의 認識轉換이 要求되며 食糧供給產業의 次元에서 再考되어야 한다. 둘째, 海外漁業協力의 強化를 통한 海外漁場의 安定的 確保와, 세째, 新漁場開拓 및 公海漁場 進出을 통한 操業漁場의 多變化 推進, 네째, 政府의 과감한 施策轉換과 遠洋業體의 經營改善을 통한 國際競爭力を 強化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다섯째, 각沿岸國의 水產政策 및 入漁制度를 면밀히 把握하

여 漁業合作 및 漁業協力 形態의 入漁推進 等이 병행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I) 海外漁業協力事業의 積極的 推進 및 新漁場 開發

200마일 經濟水域 宣布와 沿岸國의 漁業資源 自國化政策 強化로 既存 漁場으로부터의 逐出 및 公海漁場에 對한 規制, 沿岸國의 入漁料의 過多要求를 비롯하여 經濟支援要請等이 있어 이를 打開하고 海外漁場의 持續的, 安定的 確保를 위하여는 民間業界의 自救努力는 물론 政府次元의 과감한 行政支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懸案으로 提起하여 推進하여야 하겠다.

○ 業種別

(1) 참치延繩漁業은 既進出國인 南太平洋 島嶼國 키리바시, 佛領 폴리네시아, 쿠, 투바루, 소말리아, 세이셸國과의 關係持續은 물론 赤道水域을 中心으로 한 활다랭이와 눈다랭이 操業보다 高品質魚種의 漁獲으로 高魚價를 받을 수 있는 中緯度漁場 開發을 위해 페루, 칠레, 앙골라, 모잠비크 等의 新漁場 開發進出이 要求되며, 아울러 횟감用 참치의 內需市場 開拓 等으로 우리의 참치市場을 確保하는 것이 時急한 實情이다.

(2) 참치旋網漁業은 既存의 파푸아뉴기니아, 마이크로네시아와의 入漁交涉 強化는 물론 이들 漁場 進出國인 日本, 臺灣 等과도 緊密히 情報를 交換하여 有利하게 對處하여야 하며, 또한 프랑스, 스페인의 참치旋網漁船團의 主漁場인 印度洋 中部海域 進出을 위해 세이셸, 말디브國과도 漁業交涉을 推進해야 하며 漁獲物 販賣의 多元化를 위해서는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等 低賃金國의 통조림 委託加工 내지 現地合作工場의 建設을 통한 輸出事業 推進도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3) 北洋트롤漁業은 美國의 漁業自國化 政策推進으로 1990年부터 이미 外國漁船을 撤收시키고 있는 狀態에 있으며 北洋公海漁場

의 操業을 위하여 韓國, 日本, 폴란드, 中國 等 操業國은 베링公海의 自由操業權 確保를 위해 계속 協力하고 있으나 沿岸國 魚族資源의 回游와 關聯있는 公海操業은 自國 魚族資源과 깊은 關係가 있다하여 外國漁船의 操業을 一方的으로 禁止시키고 있는 現狀이고 1991年 9月16日 韓, 러間 漁業協定 締結에 따른 러시아水域에서의 우리漁船의 漁撈活動은 아직까지는 不振한 狀態에 있음으로 北洋트롤漁業은 漁場確保와 經營收支採算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一般트롤漁業은 그동안 主漁場이던 大西洋의 모리타리아, 모로코等에서 逐出되어 窮餘之策으로 세네갈, 기니아, 기니비사우, 나이제리아, 앙골라等 西部 및 東部아프리카와 오만, 소말리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等 印度洋 沿岸에 進出하여 現狀維持하고 있으나 漁場性과 入漁條件 等 問題點이 많아 安定된 漁場을 確保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今後 아이슬랜드, 그린랜드 뉴우파운드랜드 等 大西洋 北部漁場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및 페루, 칠레, 멕시코 等 南美 水域入漁에 積極努力하여야 할것이며 아울러 漁獲效率을 높이기 위해서는 中層트롤漁法의 開發, 導入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5) 새우트롤漁業은 그간 南美 수리남漁場을 為主로 操業하여 왔으나 資源이 急激히 減少되어 漁獲率이 매우 低調한 狀態이고 수리남 國營加工會社(SAIL)의 獨占收買에 의한 不合理한 與件으로 漁業經營이 惡化되고 있어 今後 漁場性이 良好한 隣近國家인 GUYENA 漁場의 開發推進이 要望되고 있다.

(6) 오징어漁業은 南西大西洋水域 및 뉴질랜드, 페루, 北太平洋 公海水域에서 操業하여 왔으나 入漁國의 過多한 入漁料 要求와 入漁規制 強化에 따라 漁業採算性이 惡化되고 있어 에콰돌, 베네주엘라, 칠레, 멕시코 等 太平洋沿岸國에 對한 資源調查 및 試驗操

業推進이 要望되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는 國內消費可能物量에 따라 魚價가 形成되므로 適正魚價維持와 消費擴大를 위하여는 收益性 있는 新製品 加工開發을 促進하여야 하고 需要供給을 감안한 政府當局의 適正出漁隻數의 調整이 要望된다.

한편 水產商品도 UR開放措置에 따라 國際交易自由化가 實現될 境遇 資源保有沿岸國의 海外市場開發活動이 活潑하게 展開될 것으로 앞으로는 漁撈活動에 의한 操業뿐만 아니라 水產物加工分野에도 力點을 두어 附加價值를 높이는 側面으로 方向을 轉換하여 沿岸國과 協力共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어진다.

2) 遠洋漁船의 省力化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漁船은 漁業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生產手段이므로 効率的인 省力化漁船의 確保는 船員安全뿐만 아니라 生產性을 提高시키며 國際競爭力確保에 重要한 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國際開放化時代에 競爭力を 強化하고 이에 對應하기 위하여는 老朽漁船의 과감한 整備措置가 要求되어 生產에 效率性이 있는 省에너지型漁船으로 改良하여 人力과 漁撈經費를 減少시켜 採算이 맞는 操業을 하여 國際競爭力 提高에 對應할 수 있는 方案이 하루속히 講究되어야 한다.

3) 合作漁業과 現地法人設立推進

大部分의 沿岸國은 水產資源自國化政策推進과 資源의共同開發을 希望하고 있으며 外國漁船의 單純入漁는 規制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入漁國의 資源을 共同으로 開發生产하여 共生共存한다는 認識을 하여야 하므로 現地對方社選定에 慎重을 기하여야 하고 投資條件을 비롯하여 現地法令 및 事業性判斷을 正確히 檢討한 然後 現地法人設立을 推進함이 바람직하겠다.

過去의 合作事業은 經營收支面만을 考慮하여 生產된 魚類가 國內로 搬入販賣되는前提에서 事業을 推進해 왔으며 이로 인하여 國內의 需要供給에 蹤跌을 빚어왔을 뿐만 아니라 適正魚價維持에 많은 問題點이 있어왔다.

앞으로의 現地合作法人的設立運營은 外國의 漁業基地에서 우리의 漁撈技術을 傳援시키고 점차 老朽漁船을 移轉한다는 立場에서 行하여야 하며 國내의 水產物需要供給과 外國에 輸出을 병행하여 利潤을追求함과 동시에 先進水產韓國의 位相을 宣揚하면서 그 나라 漁業發展과 韓國漁船의 入漁를 推進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留念할 事項은 合作對方國의 漁業政策把握이다. 操業水域對象魚族資源의 分布와 混獲魚種을 비롯船舶의 船令이나 投資比率, 過失金送金問題, 外國人の 乘船比率, 關稅에 관한 事項 및 社會全般的諸般與件의 受當性을 確認하여야 하겠다.

以上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遠洋漁業은 200海里經濟水域宣布로 인한 入漁規制의 強化로 漁場縮小는 물론 沿岸國의 資源自國化政策強化에 따라 점차 單純入漁는 禁止趨勢이고 漁業協力條件내지 合作事業推進政策이 強化되고 있어 이에 對한 檢討가 不可避하게 되자 漁場이 없는 우리의 立場으로서는 安定의in 漁場確保로 漁業採算性維持와 水產物需給의 安定을 위하여는 海外合作事業等에 非經濟性船舶의 海外合作投入 및 國內船員求得難에 따른 現地民雇傭等을 활용하여 漁業經營의 惡化要因을 除去하여 經營改善을 圖謀하고자 努力하고 있는 現狀이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沿近海漁業이나 遠洋漁業을 國民食糧供給產業의 次元에서 檢討되도록 政界와 政府關係者들의 認識을 再考시켜야 하겠으며 그러기 為하여는 우리 水產人 모두가 合心團結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水產業은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魚族이 豐富한 漁場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漁船은 大部分이 17年以上의 老朽船입니다. 훌륭한 우리의 漁業技術을 더욱 發展시키고 우리들의 後孫에게도 繼承시키며 先進水產國 隊列에서 落伍되지 않을려면 우리들의 權益을 代辯할수 있는 強力한 總集合體의 行政機關이 設立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現在 水產廳이 水產業 發展을 為하여 電力投球하고 있으나 水產廳만으로 解決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例를 들면 漁船建造를 비롯 船舶導入業務는 商工部에서 行하고 있으며 港灣建設은 建設部에서 하고, 漁業團束과 海上漁業 秩序維持業務는 內務部에서 하고, 船員業務는 交通部에서 하고 있으며 그외 保社部를 비롯 勞動部等 여러 部處에서 分散 施行處理하고 있으니 우리 水產人은 많은 時間浪費와 이에 따른 經費의 過多發生等 말할수 없이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現狀이므로 하루속히 是正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質問 1

○ '93年 5月頃 水產大學 練習船을 ADB의 借款에 依하여 5隻(950ton級 3隻, 330ton級 1隻, 160ton級 1隻)을 新造하는데 漁場의 効率의 開發과 經費의 節減 等을 考慮하여 官·民·學이 認識을 같이하여 資源開發을 為한 對策講究에 對한 理事任의 見解를 묻습니다.

質問에 對한 答

－水產大學에서 規模가 큰 練習船 5隻을 新造한다고 하니 于先 水產人の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本人이 방금 말씀드린 當面 遠洋漁業의 問題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海外漁場을 開發하는 專擔機能을 가진 機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日本은 海外資源開發 CENTER가 있어 大型調查船(深海丸 等)으로 하여금 世界 여러 海域에 出動시켜 海況을 비롯하여 魚族資源 分布狀況을 調查하여 業界에 企業性을 評價시켜 出漁을 勸獎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境遇는 水產振興院의 調查船과 水產大學의 練習船이 近距離 漁場을 調査한 바는 있으나 船舶運航과 調査費 等의豫算이 不足하여 海外漁場 全般的인 調査는 할 수 없으므로 政府次元에서 先導的으로 漁場調查를 實施하여야 하나 現在는 業界 스스로가 漁場을 開發하여 入漁하므로 莫大한 經費가 消費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우리나라의 海外漁業을 發展시키자면 政府次元에서 새로운 漁場開發의 切實할 때입니다.

－水產大學의 練習船이 竣工된 후 船舶規模과 業種等을 考慮海域別 漁場開發에 運用된다면 遠洋業界는 크게 歡迎할 것이며 新漁場開發에 따른 船舶運航豫算은 政府次元에서 果敢하게 檢討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水產人 모두는 이에 協力하여야 하겠습니다.

質問 2

○ 漁業과 漁船에 關한 國際的인 協力を 受容하기 為해서는 科學的이고 基礎的이며 社會的인 側面에서 여러가지 檢討되어야 할 要素가 많은데 특히 漁場開發을 為한 國際協約의 차원에서 이를 受容하기 위한 官·民·學의 意見收斂에 對한 協會理事任의 見解를 묻습니다(行政官廳과도 關係가 된다).

質問에 對한 答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韓國遠洋漁業協會는 政府의 指示에 따라 海外漁業에 關한 全般的인 事項의 業務를 取扱하고 있습니다.

－例를 들면 遠洋漁船 建造事業에 關한 政

府支援計劃 業務의 遂行, 海外漁場의 入漁交涉, 合作 및 共同漁撈事業과 國際漁業機構의 會議參加, 政府間 漁業協定 締結에 따른 附屬約定 更新 및 協定履行의 遵守, 漁船員의 勞使問題, 出漁資金의 確保 및 配定을 비롯하여 魚價의 安定 對策檢討는勿論, 어획물의 販促活動과 良質의 國民蛋白質 供給, 輸出業務 等 우리나라 遠洋漁業과 關聯있는 綜合的인 事項을 取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廣範圍한 諸般事項을 檢討하고

施行하기 為하여는 우리들의 單獨 힘으로는 不可합니다.

따라서 現在는 水產振興院의 協助와 關係專門家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遠洋漁船이 海外漁場에서 良質의 漁獲物을 生產하게 하고 高魚價를 維持하며 生產性을 높이고 漁業經營을 改善하기 為하여는 官·民·學이 合同으로 모든 事項을 檢討하여 어려운 國際漁業環境을 打開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